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54
----------	-------

발의연월일 : 2026. 8. 5.

발 의 자 : 김대식 · 김선교 · 김태규
이주영 · 김상훈 · 윤한홍
김승수 · 한동훈 · 안철수
윤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권자가 이를 장소 또는 해당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음.

그런데 현재 선거인명부 열람은 구·시·군별 인터넷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선거권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며, 선거인명부의 점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인명부 열람수단을 확대하여 선거권자가 자신의 등재 여부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명부 관리 과정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선거권 보장 및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정상적인 작성·출력을 위하여 필요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단서 중 “제1항의”를 “제1항 후단 및 제2항의”로,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을 “열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공고하여야”를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전자정부서비스의 종류 및 열람방법을 공고하여야”로 한다.

②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하여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전자정부서비스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를 “인터넷홈페이지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0조제3항에”를 “제40조제4항에”로, “확인기간”을 “전자정부서비스

의 종류, 확인기간”으로 한다.

제247조제2항 중 “때에는”을 “때 또는 제39조제10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때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9條(名簿作成의 監督 등) ① 選舉人名簿(거소 ·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의 작성에 관하여는 管轄區 · 市 · 郡選舉管理委員會 및 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監督한다. <후단 신설> ② ~ ⑨ (생 략) 第40條(名簿閱覽) ① (생 략) <신 설> ② 選舉權者는 누구든지 選舉	第39條(名簿作成의 監督 등) ① - ----- ----- ----- ----- ----- ----- -----. 이 경우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정상적인 작성 · 출력을 위하여 필요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 ② ~ ⑨ (현행과 같음) 第40條(名簿閱覽) ① (현행과 같음) ② 구 · 시 · 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하여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전자정부서비스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

人名簿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③ 구·시·군의 장은 閱覽開始日전 3日까지 第1項의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公告하여야 한다.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생략)

②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의 장은 제40조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인

---. -----제1항 후단 및 제2항의-----열람은-----
-----.

④ -----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전자정부서비스의 종류 및 열람방법을 공고하여야-----.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터넷홈페이지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하여-----

-----.

③ -----제40조제4항에-----

터넷 홈페이지 주소, <u>확인기간</u> 및 확인방법을 함께 공고하여 야 한다.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① (생략) ②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 員, 選舉事務에 종사하는 公務 員 또는 選舉人名簿作成에 관 계있는 者가 選舉人名簿에 故 意로 選舉權者를 기재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年 이 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 의 罰金에 處한다.	-----전자정부서비 스의 종류, <u>확인기간</u>----- -----.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때 또는 제39조제10 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지 아 니하거나 그 결과를 작성・보 존하지 아니한 때에는----- ----- -----.
---	--